

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6,884,097	11,606,523
일반회계	369,568,621	11,087,059
특별회계	17,315,476	519,464
기타특별회계	17,315,476	519,46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86,188	26,58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80,007	2,4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867,984	116,04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299,210	68,976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216,633	36,499
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86,892	2,607
상수도특별회계	5,564,447	166,933
수질개선특별회계	182,675	5,48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131,440	93,94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31,56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